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	--------

제출일자	2010. 1. .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
- 지방세법 : 취득·등록·재산세 면제(지방세법 제273조제2항)
 - 감면조례 : 도시계획세 면제
- 나.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5 신설).
-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에 대한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 적용
- 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을 정비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 사업소세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132조의2, 제196조의5제1항, 제273조
- 그 밖의 개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1. 6 ~ 2010. 1.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각각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제19조 및 제20조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 계산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1. ----- ----- -----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 3. (생략)</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p>	<p>② ----- ----- ----- ----- -----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 ----- ----- ----- -----</p>

현 행	개 정 안
<p>「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 ----- ----- ----- ----- -----.</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1. ----- ----- -----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 3. (생략)</p>	<p>2. ~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p> <p>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을 -----.</p>
<p>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p> <p>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을 -----.</p>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부칙 <제7843호, 2005.12.31>

제9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①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26, 1990.12.31, 1991.12.14, 1995.12.6, 1998.12.31>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1건당 7,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 1991.12.14, 1995.12.6, 1998.12.31>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가.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 업 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2.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③ 삭제 <1998.12.31>

[본조신설 1979.4.16]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 2005.1.5>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800시시이하	80원	1,0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1,600시시이하	19원	1,600시시이하	140원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2,500시시초과	24원	2,000시시초과	220원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text{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2 ≤ n ≤ 12)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킬로그램이하	6,600원	28,500원
2,000 킬로그램이하	9,600원	34,500원
3,000 킬로그램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킬로그램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킬로그램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킬로그램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킬로그램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3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②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1.12.14, 2000.12.29, 2005.12.31>

[본조신설 1976.12.31]

□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人的) 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 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9.3.25>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부도임대주택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09.9.21>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①법 제16조 및 제7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87.6.27, 1989.3.18, 1991.4.2, 2000.12.30, 2002.1.14, 2005.6.30, 2007.12.31, 2008.7.29, 2010.1.1>

1. 기금증식사업

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 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라.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2. 후생복지사업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의 운영 및 장사 관련 사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2의2. 삭제 <2010.1.1>

3. 삭제 <2010.1.1>

4. 삭제 <2010.1.1>

5. 삭제 <2010.1.1>

6. 삭제 <2010.1.1>

□ 「자동차관리법」

-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004.12.6, 2005.9.16, 2007.6.7>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별표 1] <개정 2009.4.8>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승 용 자동차	배기량이 800cc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미만 이거나 길이·너비· 높이중 어느 하나 라도 소형을 초과 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이 상이거나, 길이·너 비·높이 모두 소형 을 초과 하는 것
	배기량이 1000 cc미만으로서 길 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 합 자동차	배기량이 8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 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이거나, 길이·너 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 상이거나, 길이·너 비·높이 모두가 소 형을 초과하여 길이 가 9미터 이상인 것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 미터·높이 2.0미 터 이하인 것			
화 물 자동차	배기량이 800cc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 미터·높이 2.0미 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 톤이하인 것으로 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 톤초과 5톤 미만 이거나, 총중량 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이 10톤 이상인 것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800cc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100cc 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기타형에 한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주

1.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2.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3. 이륜자동차의 정격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유 형 별	세 부 기 준
승 용 자 동 차	일 반 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 목 적 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 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 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 타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 용자동차인 것
승 합 자 동 차	일 반 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 수 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 핑 등)를 가진 것
화 물 자 동 차	일 반 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 프 형	적재힘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 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 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 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 인 것
	특 수 용 도 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 송용인 것
특 수 자 동 차	견 인 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 조인 것
	구 난 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 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 수 작 업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 수작업용인 것
이 른 자 동 차	일 반 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 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 수 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 타 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